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42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 김재진,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ㆍ석,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이종배, 이종태, 장태용, 정준호, 최민규, 허ㆍ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5명)

1. 제안이유

○ 산림보호법 에 규정된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보호수의 행위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수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서울시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수를 지정할 때 고시 및 이의신청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나.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3)

라.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4)

마.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바. 보호수의 보호에서 행위 제한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함(안 제8조)

사. 보호수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시장이 지정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의 제목 “(보호수의 지정)”을 “(보호수의 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관리인 등은”을 “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

   가. 지정 연월일

   나.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다.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

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청은 지정목적에 따라 보호수를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경우

가.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전문가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청에서는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의4(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1. 보호수 주변을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
2. 보호수 주변에 주택, 주차장 등이 있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호수
3. 그 밖에 시장이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수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보호수의 해제)”를 “(보호수의 지정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 화재”로,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를 “인한 소실 및 손상 등으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지정목적에 미달하는 것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리청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중 “표시할 수 있도록”을 “안내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은 관리청이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등의”를 “등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기”를 “시행하기”로, “발생할”을 “생육에 영향을 미칠”로, “경우 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목보호기술자”를 “수목보호 전문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시장이 지정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시장이 지정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보호수의 지정) ① 시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3조(보호수의 지정・고시) ① 시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 가. 지정 연월일 나.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다.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보호수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은(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 ---------- 관리인----------.
③ 관리청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⑧ ------ 제7항----------.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리청은 지정목적에 따라 보호수를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고시하고, 보

	호수의 소유자와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

	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청은 지정목적에 따라 보호수를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경우 가.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전문가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청에서는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4(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1. 보호수 주변을 다수인이 휴식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 2. 보호수 주변에 주택, 주차장 등이 있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호수 3. 그 밖에 시장이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수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보호수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	제4조(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 1. --- 천재지변, 화재 ----- 인

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소실 및 손상 등으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 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리청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보호수의 표지) 관리청은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의 표지) ---------- ---------- ------- 안내하는 ---------- ----------.
제6조(보호수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① (생 략)	제6조(보호수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 ---------- ---------- ----------.
제7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의무) 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의 변경이 있	제7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의무) ① ---------- 등에 ---------

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된 사람은 변경사항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보호수의 보호) ①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채취, 절·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보호수의 보호)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수목 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청에서는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삭 제>
③ 관리청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	---------- ---------- - 시행하기 ---------- ---------- 생육에 영향을 미칠 --- 경우 ----

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시장 또는 관리청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보호수의 점검) ① 관리청은 보호수의 수세유지,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수의 점검) ① -------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의 보호·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수목보호 전문가----------.